

중국의 固體廢物汚染防治法

노청석*·최동일**

《 차 례 》

- I. 序
- II. 중국의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 관련 立法
- III.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주요 내용
- IV. 固體廢棄物汚染環境에 대한 法律責任
- V. 고체폐기물오염환경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문제해결의 방법의 모색
- VI. 나가며

I. 序

고체폐기물은 인간의 생산과 생활과정에 발생한 고체 형태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런 고체 형태의 폐기물의 부적당한 저장, 이용, 처리와 배출로 환경이 오염되고 나아가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기물이 고체 형태로 존재하기에 대량의 토지를 占用하고 토지를 오염하게 되고, 직접 水體에 배출될 경우 불가피하게 地表水를 오염하게 되고, 또 대량의 폐기물의 퇴적[堆放]은 일련의 화학반응과 발효 등을 통해 有害氣體를 생성하고 大氣에 방출하게 되고, 각종 세균과 해충을 寄生하게 하여 질병의 傳播를 통한 직접으로 인간의 신체에 危害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의 폐기물 관련 문제라면 우선은 도시의 쓰레기문제를 말한다. 도시의 쓰레기에는 공업쓰레기, 생활쓰레기, 危險한 쓰레기가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농촌의 쓰레기 문제는 그다지 엄중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농촌의 鄉鎮企業이 발전하면서 농촌의 환경문제도 점점 문제화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도시쓰레기를 노천에 퇴적[露天堆放], 자연골짜기[自然填溝]를 메우는 것, 웅덩이[填坑]를 메우는 것 등 이런 원시적인 방식으

* 中國 延邊大學校 法學院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中國 延邊大學校 法學院 전임강사.

로 도시쓰레기를 처리하였다. 도시의 쓰레기는 통상 도시주변의 郊外지역으로 운송하여 노천에 퇴적 혹은 퇴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本意 아니게 쓰레기가 도시를 包圍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¹⁾ 이런 처리방식은 토양, 지하수, 대기 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潛在적인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의 쓰레기문제는 더욱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도시시민들의 생활수준의 提高의 障礙로 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 혹은 環境權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폐기물에 대해 이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폐기물발전소를 세워 가동에 들어간 곳도 있다. 이렇게 폐기물이 환경문제로 등장하면서 중국정부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래는 중국 폐기물관련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論하러 한다.

II. 중국의 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 관련 立法

1. 고체폐기물 관련 立法

1) 고체폐기물의 개념

고체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法」 제74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고체폐기물이란 生産建設, 日常生活과 기타 활동에서 생성한 환경을 오염하는 고체상태와 半固體상태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都市化의 발전과 공업의 발전은 고체폐기물의 양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업폐기물을 보더라도 1991년에 3,376만 톤이 생성되었고, 1995년에는 고체폐기물이 합계로 664,103만 톤에 달하고 6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占用하였다.²⁾

1) 도시의 쓰레기는 대부분이 도시와 농촌의 인접지역인 郊外로 운송하여 처리하였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은 郊外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운송하여 처리, 자연 골짜기를 메우는 것, 웅덩이를 파서 묻는 것 등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장소의 有限性으로 인하여 한 곳의 처리장소가 가득 차서 더 사용할 수 없으면 郊外의 다른 곳을 찾아 처리하여 쓰레기가 도시를 포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固體廢物의 연도별 생성량과 배출량 概況

1996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6.6억 톤, 工業固體廢物배출량은 1690만 톤, 그중 危險廢物의

2) 고체폐기물 관련 입법

고체폐기물의 대량 생성과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 有效한 조치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중국에서 고체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고체폐기물의 綜合利用에서 시작하였다. 1956년 12월에 국무원에서 비준한 「鑛産資源保護試行條例」에 광산자원에 대해 종합측정, 종합개발과 종합이용을 한다는 方針과 조치를 규정한 바 있다. 그 후 20세기 70년대부터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에 국무원

배출량이 22만 톤으로 占用한 토지는 총 51,680헥타르에 달한다. 鄉鎮工業의 발전으로 鄉鎮기업에서 배출한 工業固體廢物은 4.1억 톤으로 당해년도의 전국의 公업고체폐물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10.6억 톤,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생성량이 6.6억 톤에 달해 62.3%를 차지하고, 工業固體廢物 중 危險廢物이 1077만 톤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率은 45.2%에 달한다.

1998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8억 톤,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생성량이 6.4억 톤에 달해 80%를 차지하고, 公업고체폐물배출량은 7034만 톤으로 그 중 鄉鎮工業배출량이 521만 톤을 차지하여 총 배출량의 74%를 차지하였다. 危險廢物의 생성량은 974만 톤으로 現급 이상의 公업에서 생성한 양이 905만 톤으로 危險廢物의 92.9%를 차지한다. 公업고체폐물의 綜合利用率은 47%로 그 중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率은 48.3%에 달한다.

1999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7.8억 톤,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생성량이 6.5억 톤에 달해 83.3%를 차지하고, 鄉鎮工業의 생성량이 1.3억 톤에 달한다. 公업고체폐물배출량은 3881만 톤으로 그 중 鄉鎮工業배출량이 2726만 톤을 차지하여 총 배출량의 70.2%를 차지하였다. 危險廢物의 생성량은 1015.5만 톤으로 現급 이상의 公업에서 생성한 양이 910.5만 톤으로 危險廢物의 92.9%를 차지한다. 公업고체폐물의 綜合利用率은 45.6%로 그 중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率은 51.7%에 달한다.

2000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8.2억 톤,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생성량이 6.7억 톤에 달하고 향진公업의 생성량이 1.5억 톤에 달한다. 公업고체폐물배출량은 3186만 톤으로 그 중 향진公업배출량이 2146만 톤을 차지하여 총 배출량의 67.3%를 차지하였다. 危險廢物의 생성량은 830만 톤으로 現급 이상의 公업에서 생성한 양이 796만 톤으로 危險廢物의 95.9%를 차지한다. 公업고체폐물의 綜合利用率은 45.9%로 그 중 現급 이상의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率은 51.8%에 달한다.

2001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8.87억 톤에 달하고 公업고체폐물배출량은 2893만 톤에 달한다.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量은 4.7억 톤에 달하고 綜合利用率은 52.1%에 달한다. 그 외에 固體廢物을 32.5만 톤을 수입하고 8.22만 톤을 수출하였다.

2002년 : 工業固體廢物의 생성량은 9.5억 톤에 달하고 公업고체폐물배출량은 2635.2만 톤에 달한다. 工業固體廢物의 綜合利用量은 5.0억 톤에 달하고 綜合利用率은 52%에 달한다. 危險廢物의 생성량은 1000만 톤이다. 生活廢物의 淸소운송량(淸運量)은 13,638만 톤이고 無害化처리량은 7,404만 톤으로 無害化처리율이 54.3%에 달한다. 그 외에 固體廢物을 39.6만 톤을 수입하고 5.7만 톤을 수출하였다. (<http://www.zhb.gov.cn> 國家環境保護總局)

環境保護領導小組의 「環境保護規劃要點和主要措施(환경보호계획요점과 주요조치)」에 기업은 종합이용과 공정기술을 적극 개선하여 오염피해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있고, 1979년의 「環境保護法(試行)」에 광산자원의 종합이용에 대한 규정 외에 공업기업과 도시생활쓰레기문제를 방지하고 정화할 데 관한 규정도 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법」, 「水污染防治法」, 「大氣污染防治法」, 「水法」, 「鑛產資源法」 등 법률과 각종 배출기준에도 고체폐기물의 배출과 控制, 污染防治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고체폐기물의 來源이 다양하기에 관련되는 부서마다 管理規定을 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82년의 原 城鄉建設環境保護部에서 공포한 「城市市容環境衛生管理條例(試行)」에 도시의 환경위생과 도시생활쓰레기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1985년 국무원에서 「海洋傾廢管理條例」를 제정하여 海洋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그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1989년에 「傳染病防治法」을 제정하여 傳染病原體汚染을 하는 쓰레기 등 위생처리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이렇게 고체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많고 각자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기에 서로 重複 管理를 하는 것도 있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사각지대도 생겨나게 되었다.

위의 법률과 행정법규, 조례 등은 고체폐기물의 행정관리와 污染防治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지만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防止와 정화의 실제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80년대 中期부터 시작하여 고체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을 거쳐 1995년 10월에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³⁾을 제정하였다.

고체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綜合的인 법률인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1996.4.1)」⁴⁾ 외에 1996년의 「廢物進口環境保護管理潛行規定」과 이에 대한 보충규정, 「廢物進口環境保護管理潛行條例」, 「醫療廢物管理條例」, 「危險化學品安全管理條例」, 「都市放射性管理辦法」, 「中華人民共和國放射性污染防治法」, 「醫療衛生機構醫療廢物管理辦法」, 「進口廢物環境保護控制標準」 등 법률과 법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고체폐기물에 관한 법체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의 경우 고체폐기물 관련 입법을 보면 대체로 “固體廢物法”, “固體廢物處理法”, “固體廢物管理法”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체폐기물에 대한 관리범위가 오직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 固體廢棄物의 재활용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중국에서는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立法名稱 면에서 외국의 경우보다 뒤떨어진 면이 없지는 않다.

4)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개정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들어가고 개정안을 기초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제품 등 고체폐기물의 최종처리문제,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의 법 집행에 대한 검사보고 등 내용을 보충할 것이다.

(<http://cenews.com.cn>)

그 외에 각 지방에서는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상황에 맞는 행정법규와 조례⁵⁾ 등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건이 허락하는 地方에서는 새로운 고체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실행하기도 한다.⁶⁾

2. 固體廢棄物汚染環境防治의 기본원칙

고체폐기물의 생성과 환경에 대한 오염 및 피해가 기타 오염물과 다르기에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치에 대해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들로는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

1)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과 防治에 대해 全過程管理原則을 실시한다.

이 원칙을 “생산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防治原則이라고도 한다. 이는 고체폐기물의 생성·수집·저장·운송·처리의 전 과정에 환경을 오염하는 것을 防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첫째, 고체폐기물의 產生 單位⁷⁾와 개인은 조치를 취하여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감소하여야 한다. 둘째, 고체폐기물을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고체폐기물의 날아가 버린 것[遺撒], 유실[丢失],⁸⁾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

- 5)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와 危險廢物汚染環境防治와 관련한 지방의 일부 조례와 규정을 보면 上海市危險廢物汚染防治辦法(1995), 廈門市建築廢土管理辦法(1999), 天津市危險廢物汚染環境防治辦法(1999), 哈爾濱市危險廢物汚染防治辦法(2002), 山東省實施<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辦法(2003), 南京市危險廢物管理辦法(2003), 四川省危險廢物汚染環境防治辦法(2004), 廣東省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條例(2004) 등이 있다. (<http://www.ep.net.cn> 中國環保網)
- 6) 일전에 廣東省人民代表大會 大常務委員會에서 통과한 「廣東省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條例」(2004. 5.1 실시)에는 廣東省 관할구역 내에서 수입 廢電子電器類 고체폐기물의 경영, 처리와 이용을 금지하고 省外, 境外的 생활쓰레기를 廣東省 관할구역 內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廣東省의 이 條例는 他 地方에 비해 환경보호면에서 앞서가는 지방법규로 그 만큼 廣東省의 環境壓力이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新華社 2004.1.19)
- 7) 중국에서 ‘單位’는 국가기관, 기업, 회사, 사회단체 등을 가리키는 범위가 넓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8) 固體廢物의 운송과정 날아가 버린 것(遺撒), 유실(丢失)된 경우의 처벌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 제15조에 “固體廢物을 생성하는 단위는 조치를 취하여 고체폐물의 환경에 대한 오염을 防止하고 減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31조에 “국가는 工業固體廢物에 대해 신고·등기제도를 실시한다. 公業고체폐물을 생성하는 단위는 국무원 環境보호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縣級 이상 環境보호행정부문에 廢物의 생성량, 流向, 저장, 처리 등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59조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의 경우 고체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도중에 고체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셋째, 고체폐기물이 될 수 있는 제품의 관리에 대해서는 應當 回收利用과 處置가 용이한 혹은 환경 속에서 解體가 용이한 포장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체폐기물에 대한 ‘三化’ 관리원칙⁹⁾

‘三化’ 관리원칙이란 즉 고체폐기물의 배출에 대해 減量化, 資源化와 影響의 無害化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減量化는 자원과 에너지이용과정에 최대한으로 자원 혹은 에너지를 이용하고 고체폐기물의 생성과 배출은 최저로 하는 것이다. 資源化는 이미 생성된 고체폐기물에 대해 회수, 가공을 통해 2차 자원 혹은 에너지로 전환하여 再利用하는 것을 말한다. 無害化는 再利用할 수 없는 혹은 현재의 기술로는 再利用이 불가능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안전하게 저장 혹은 處置를 하여 환경과 人身, 財產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三化’원칙을 실시하도록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첫째, 국가는 청정 생산을 할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고체폐기물의 생성량을 감소한다. 둘째, 국가에서는 자원의 종합이용과 고체폐기물의 충분한 回收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셋째, 국가에서는 고체폐기물의 環境汚染防治에 대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선진적인 防治技術을 보급하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편화한다. 넷째, 국가에서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의 집중처리조치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다섯째, 국가에서는 科學技

폐물을 생성하는 자가 고체폐물을 타지방에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생성지에서 합법적인 처치장소까지의 운송 및 운송과정의 오염방지를 責任져야 하고 소재지의 환경보호행정부문에 廢物의 생성량, 流向과 처치 등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固體廢物의 유실행위에 대해서도 廢物 생성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廢物의 생성지에서 합법적인 처치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송에 대해서는 廢物 생성자 자체적으로 행 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민사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맡길 수 있지만 廢物 생성자의 行政相對人의 地位에는 변함이 없고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도 廢物 생성자를 환경행정의 관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운송과정에 固體廢物의 유실사실을 발견할 시에는 廢物의 생성량, 流向과 처치 등에 관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신고 혹은 報告에 대해서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고 「行政處罰法」 제23조(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을 實施할 경우 當事者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시정 혹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의 시정을 명하는데 여기에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과 운송과정에 유실한 固體廢物을 청소하는 것 이 포함된다. (<http://www.cenews.com.cn>. 中國環境)

9)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의 環境汚染防治에 대해 고체폐기물의 생성을 감소하고 고체폐기물을 充分·合理的으로 이용하고 고체폐기물의 無害化處理원칙을 실행한다.

術과 研究單位에서 회수와 이용, 處置가 容易하고 혹은 環境속에서 解體가 용이한 農用비닐의 연구와 생산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3) 고체폐기물에 대한 分類管理原則

고체폐기물의 來源의 다양성의 관계로 여러 행정기관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고체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고체폐기물을 分別하고 分類하여 부동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부동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관리하여야 할 고체폐기물에 대해 개괄적인 규정을 취하고 있다. 즉 고체폐기물을 公業고체폐기물, 도시생활폐기물, 위험폐기물 3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중 公業고체폐기물, 도시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위험폐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3. 고체폐기물에 대한 監督管理體系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 제10조에 고체폐기물의 環境汚染防治에 대한 감독관리체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1) 全國 - 環境保護總局

국무원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境保護總局)에서는 전국의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防治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중국의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을 주관하는 부서로 전국의 환경보호업무를 총괄한다. 그 외에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防治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2) 지방 - 環境保護局

지방에 있어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지방환경보호행정부문으로 省級 환경보호국, 市(州·區)級 환경보호국, 縣(市)級 환경보호국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보호행정기관의 관리체계를 보면 2重 領導를 받는다. 즉 관련 지방인민정부의 領導를 받으면서 上級 환경보호행정기관의 領導를 받는다.

3) 기타 - 建設과 衛生부문

국무원 건설부문과 縣級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서는 도시의 위생을 책임, 즉 도시생활쓰레기를 清掃, 收集, 貯藏, 運送과 處理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는 위생행정부문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Ⅲ.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の 주요 내용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에 3개 부분으로 固體廢物을 규정하고 있다.

1. 工業固體廢棄物汚染環境에 대한 防治

공업고체폐기물은 공업, 교통 등 생산활동 중 생성된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다.

1) 落後하고 오염이 심한 설비와 공예기술을 淘汰하고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한다.

첫째,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동으로 공업고체폐기물을 감소하는 생산공예기술과 설비를 研究·開發하고 보급하며 기한 내에 淘汰할 공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여 환경을 심하게 오염하는 낙후한 공예기술과 낙후한 설비목록을 공포한다. 따라서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혹은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에서 공포한 기한 내에 각각 목록에 열거한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생산 공예기술의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목록에 열거한 공예기술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淘汰設備라고 규정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공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와 정화계획을 제정하고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을 감소하는 선진적인 공예기술과 설비를 보급하고 공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치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과 사업단위에서는 응당 합리적으로 원자재, 에너지와 기타 자원을 선택하고 선진적인 생산공예기술과 설비를 채용하여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을 감소하여야 한다.

2) 공업고체폐기물의 申告·登記制를 실시하여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을 控制한다.

첫째, 환경오염방치책임제도를 실시하고 공업고체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精化하는 조치를 취한다.

둘째,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의 신고·등기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단위는 국무원 環境보호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縣級 인민정부 環境보호행정부문에 공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 流向[유동방향], 저장, 처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체폐기물의 저장과 처치를 엄격히 관리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첫째, 기업, 사업단위에서는 자기가 생성한 이용할 수 없는 혹은 잠시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반드시 국무원 環境보호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고체폐기물의 저장 혹은 처치할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노천에 冶煉 찌꺼기, 化工 찌꺼기, 석탄 찌꺼기, 廢鑛石, 尾鑛과 기타 공업고체폐기물을 저장할 경우 適當 전문 장소에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공업고체폐기물의 저장, 處置施設과 장소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環境보호행정부문에서 규정한 環境보호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외에 處置장소와 시설을 건설하지 못한 배출기업은 공업고체폐기물을 반드시 국가 環境보호행정부문에서 규정한 장소에 저장 혹은 처치하여야 하지 기업 임의로 처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생활쓰레기 汚染環境에 대한 防治

도시생활쓰레기는 도시의 日常生活과 日常生活에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률과 법규에 생활쓰레기로 규정한 고체폐기물을 말한다.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도시생활쓰레기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도시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퇴적하는데 관한 控制

단위와 개인은 도시 인민정부의 環境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퇴적하여야지 아무 데나 마음대로 버리거나 퇴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생활쓰레기의 이용과 처리의 強化

도시생활쓰레기관리에 있어서 제때에 도시생활쓰레기를 운송해 가고 합리적인 이용과 無害化處理를 적극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도시생활쓰레기를 分類하여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것을 실현하여야 한다. 석탄연소로 인한 도시생활쓰레기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타 도시생활쓰레기를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의 인민정부에서는 代替에너지, 즉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스, 천연가스, 液化가스(LPG)와 기타 청정에너지를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야채의 도시반입을 적극 조직하여 도시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統一的인 계획을 세워 收購店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폐기물의 회수이용을 발전하여야 한다.

3) 도시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

도시생활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 도시의 인민정부에서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를 저장·운송·처리하는 자는 국가의 환경보호와 도시환경위생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의 처리시설과 장소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建設部에서 규정한 환경보호와 도시위생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의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단거나 방치 혹은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리시설을 단거나 방치 혹은 제거할 確實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재지의 縣級 이상의 인민정부 環境衛生행정부문과 環境保護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防止하여야 한다.

4) 건축쓰레기의 관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쓰레기에 대해서는 施工者가 제때에 운송·처리하여야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危險廢棄物汚染環境에 대한 防治와 그 특별규정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에 위험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해 특별규정을 하고 있는 외에 중국에서는 별도로 「醫療廢物管理條例」, 「危險化學品安全管理條例」, 「都市放射性管理辦法」, 「中華人民共和國放射性污染防治法」, 「醫療衛生機構醫療廢物管理辦法」 등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여 實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있다.

위험폐기물이란 국가의 危險廢物名錄에 열거 혹은 국가에서 규정한 危險廢物鑑別기준과

감별방법에 따라 認定한 危險特性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위험특성이란 毒害性, 易燃性, 폭발성, 腐蝕性, 反應性, 傳染疾病性, 放射性 등을 말한다. 이런 위험폐기물에 대해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특히 엄격한 관리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國家危險廢物名錄制

危險廢物名錄은 국가행정기관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각종 危險廢物의 유형, 來源 및 자주 보게 되는 危害組成成分 혹은 廢物名稱에 대해 규정을 한 文書를 말한다. 이 문서는 국가 環境보호행정부에서 기타 관련 부서와 협동으로 제정한다. 1998년 2월, 제1차로 47개 種類에 600여種의 危險廢物을 포함한 「危險廢物名錄」을 공포한 바 있다. 이런 危險廢物은 주로 公營기업과 病院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각종 有機廢溶劑, 高濃度化工母液, 熱處理電鍍廢渣液, 化工廢渣, 防腐劑, 廢電池, 病院의 手術臨床廢物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廢電池, 廢日光燈, 病院의 特種쓰레기의 량이 제일 많고 위험하다.

2) 危險廢物識別標志制

危險廢物을 취급하는 관련 인원의 생산과 經營활동과정에 危險廢物의 식별이 容易하고 방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識別標志制를 실시하고 있다. 즉 危險廢物의 容器와 包裝物 및 수집·저장·운송·처리하는 시설, 장소에 반드시 危險廢物識別標志를 하여야 한다. 식별표지에는 警告性 圖案외에 危險廢物의 명칭, 종류 및 위험특성을 文字로 說明하여야 한다.

3) 危險廢物經營許可制

環境보호행정부문의 본 행정구역내의 危險廢物의 經營상황을 더욱 確實히 了解하게 위하여 危險廢物을 생성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신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危險廢物을 수집·저장·처치를 經營하는 단위는 반드시 縣級 이상 人民정부 環境보호행정부문에 신청을 하여 經營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經營허가증이 없거나 혹은 經營허가증에 규정한 범위 외에 危險廢物의 수집·저장·처리하는 經營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危險廢物을 經營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 혹은 위탁하여 수집·저장·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접 危險廢物의 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거쳐 합격 후에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危險廢物을 수집·저장하는 자는 반드시 危險廢物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성질이 상이하고 安定성처치를 하지 않은 危險廢物을 혼합하여 수집·저장·운송·처리하

여서는 아니 되고, 기타 非危險廢物에 混入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危險廢物의 운송자는 조치를 취하여 環境오염을 防止하여야 하고, 위험화학물운송관리규정을 준수하고 危險廢物을 승객과 같은 운송도구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危險廢物을 수집·저장·운송·처리한 장소, 시설, 설비와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他用途로 사용하려 할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오염을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다.

4) 危險廢物의 處置규정

危險廢物의 處置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危險廢物에는 醫療廢物,¹⁰⁾¹¹⁾ 放射性廢物,¹²⁾ 化工廢物¹³⁾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폐물은 각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危險廢物을 처리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소재지 環境보호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가 불합격일 경우 소재지 縣級 이상 인민정부 環境보호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하게 한다. 이것을 ‘行政代處置’라고 한다.

처리비용은 危險廢物을 생성한 단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危險廢物의 처리결과가 인근 주민의 人身과 財產의 안전에 관계되기에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에 “도시 인민정부는 危險廢物을 集中處理하는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¹⁵⁾

10) 醫療廢物이란 醫療衛生機構에서 의료, 예방, 보건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생성한 직접 혹은 간접적 感染性, 毒性 및 기타 危害性이 있는 폐물을 말한다. (「醫療廢物管理條例」 제2조)

11) 醫療廢物의 處理는 「醫療廢物관리조례」(2003.6.4)의 규정을 적용한다. 條例의 규정에 따라 縣級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책임지고 醫療廢物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집중처리시설 혹은 처리능력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본 條例施行日부터 區를 설치한 市級 이상 도시에서는 1년 내에 醫療廢物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고 縣級 市에서는 2년 내에 醫療廢物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醫療廢物集中處置設施의 건설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과도기의 醫療廢物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인민정부에서 環境保護와 衛生요구에 부합되는 방안을 제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2) 放射性廢物의 管理에 대해서는 「中華人民共和國放射性污染防治法」 제6장에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13) 化工廢物의 처리는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危險化學品安全管理條例」(2002.3.5 실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중국은 인민폐 195억 원을 투입하여 危險廢物집중처리공정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8개 구역에 危險廢物集中處理處置場의 건설과 113개의 醫療廢物集中處理設施의 건설이 포함되고 2005년까지 危險廢物의 적당한 처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天津, 沈陽 등 소수 도시에 危險廢物처리중심이 건설되어 있고 기타 도시에는 危險廢物을 단독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없고 기타 일반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이다. 국무원에서 일전에 批准한 國家環保‘十五計劃’에 2005년 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危險廢物의 ‘轉危

5) 危險廢物의 汚染事故時의 強制應急조치와 처리규정

危險廢物의 오염사고의 발생을 고려하여 危險廢物을 生成·수집·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단위에서는 오염사고 발생시의 應急措置와 防犯措置에 대해 규정을 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문에 보고를 하고 해당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는 이에 대해 檢査를 하여야 한다. 事故 혹은 기타 돌발사건으로 危險廢物의 兪중한 환경오염을 조성한 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과 危害를 제거 혹은 경감하여야 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단위나 주민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문과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그들의 調查·處理를 받아야 한다. 事故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威脅할 경우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는 兪당 縣級 인민정부에 報告하여 해당 인민정부에서 有效한 조치를 취하여 危害를 제거 혹은 경감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체폐기물의 이전에 대한 규정

고체폐기물의 移轉에 대해 엄격히 控制를 하고 있다.

1) 省級 行政區域을 이전할 경우

고체폐기물을 省,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여 저장, 처리할 경우 고체폐기물의 移出地의 省級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報告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고체폐기물의 接受地 省級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境外의 고체폐기물

중국 境外의 고체폐기물의 중국 국내로의 進入하여 버리고 퇴적하고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爲安'을 실현하고 危險廢物의 安全處理능력을 5000톤/日, 醫療廢物의 안전처리능력을 1650톤/日로 증가하고, 危險廢物의 處置基準을 제정하고 전면적으로 危險廢物의 處置費用을 징수하고, 危險廢物과 有毒有害化學品의 오염방지기술연구를 진행하고 醫療廢物과 기타 危險廢物의 無害化 처리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한다고 지적하였다.

(<http://www.ahinfo.gov.cn/xinwen/kj/kj0202/kj02193.htm>).

- 15) 2003년 9월 1일, 天津市綜合性危險廢物處理處置中心이 정식으로 가동하였다. 이 중심은 中法合資企業으로 國家高科技産業示範項目으로 國產率이 90% 이상에 달한다. 총 투자액이 인민폐 1.15억 원에 130 畝의 토지를 차지하고, 소각, 물화처리, 안전하게 땅에 묻는 등 기능이 있어 公兪危險廢物, 醫療廢物과 폐기한 危險化學品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년 처리량은 3만 톤으로 國內의 첫 綜合性危險廢物處理處置中心이다. (<http://www.cenews.com.cn/news/>)

3) 고체폐기물의 수입

국가에서는 原料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 국무원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협동으로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目錄을 작성하고 공포한다. 目錄에 포함되지 않은 고체폐기물은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할 필요가 있는 목록에 규정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려 할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부문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4) 國境經過의 금지

중국국경을 경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중국의 사업자나 혹은 외국의 사업자를 莫論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경과하여 제3국으로 폐기물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IV. 固體廢棄物污染環境에 대한 法律責任

1. 行政상 法律責任

「固體廢棄物污染環境防治法」을 위반한 행정상 책임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 주로 기한 내에 시정, 조업정지, 폐업, 과태료[罰款] 등이 있다.

1) 縣級 人民政府 環境보호행정부문의 기한 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固體廢棄物污染環境防治法」을 위반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국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공업폐기물 혹은 위험물을 申告·登記하지 않은 행위 혹은 申告·登記를 할 시 거짓 申告·登記를 한 행위, 환경보호국의 현장검사를 거절 혹은 檢査時 거짓 보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민폐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배출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배출비용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기한 내에 淘汰될 설비목록에 열거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케 한 행위, 고

체폐기물오염방지시설과 장소를 임의로 폐업, 방치 혹은 제거한 행위; 自然保護區, 風景名勝區, 生活飲用水源地와 기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公業폐기물 集中貯藏, 處置할 시설, 장소 혹은 생활폐기물 埋藏장소를 건설 혹은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여 저장, 처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민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政府의 조업정지와 폐업처분(責令停業關閉)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을 위반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업정지와 폐업처분을 할 수 있다.

- 본 법을 위반하여 生産·販賣·進口 혹은 도태된 시설을 사용 혹은 도태된 공예기술을 채용한 경우 현금 인민정부 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시정을 명한다.
- 상황이 엄중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경제행정부문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정부에서 관련 직권에 따라 조업정지와 폐업을 제청할 수 있다.
- 기한 내에 정화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造成한 危害結果에 따라 인민폐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혹은 조업정지와 폐업을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와 폐업처분은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3) 固體廢棄物汚染環境防治施設 規定을 위반한 책임

建設項目 중 동시에 같이 건설하여야 할 固體廢棄物汚染環境防治施設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혹은 合格檢査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에 투입 혹은 사용한 경우 당해 건설항목의 환경평가보고서를 許可한 환경행정부문에서 生産停止 혹은 使用停止를 命하고 동시에 인민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현금 이상 인민정부 환경행정보호부문은 관할 지역의 환경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固體廢棄物汚染環境防治法」을 위반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의 정지와 기한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동시에 인민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違法行爲로는

- 위험폐기물 標志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 혹은 위탁하여 處置하게 한 경우

-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면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혹은 移出地와 接受地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행정보호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위험폐기물을 非危險폐기물과 混合하여 저장한 경우
- 안전처치를 하지 않고 서로 容納(相容)되지 않는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집·저장·운송·처치한 경우
- 위험폐기물을 승객과 동일 운송도구에 운송한 경우
- 위험폐기물생산자가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처치하지 않고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처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 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의 수집·저장·운송·처치하는 장소, 시설, 설비와 용기, 포장물 및 기타 물품을 他用途로 사용한 경우

5) 위험물의 수집·저장·처치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經營許可證이 없이 혹은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집·저장·처치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행정부문에서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의 수집·저장·처치하는 과정에 重大한 環境汚染事故를 조성하고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重大한 손실을 조성 혹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고체폐기물의 수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저장·처치한 행위에 대한 처분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境外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 境外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버리거나 퇴적하거나 처치하거나 혹은 국무원 관련 主管部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한 경우 세관에서 당해 고체폐기물의 返送을 命하고 동시에 인민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관의 감독을 도피하여 밀수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원료명의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 중국의 국경을 경과하여 이전하는 고체폐기물은 세관에서 반송을 명하고 인민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미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온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성급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세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同法 제66조¹⁶⁾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환경오염을 조성한 경우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수입업자로 하여금 오염을 정화하도록 명한다.
-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조성한 경우 縣級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인민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경우 직접 손실의 30%를 과태료로 계산하고 과태료는 최고 인민폐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主管人員과 기타 責任者에 대해서는 소속 단위 혹은 정부의 주관부문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2. 刑事상 法律責任

固體廢物汚染環境에 관련한 형사책임에는 「형법」 제338조와 제339조에 규정하고 있다.

1) 重大環境汚染事故罪¹⁷⁾

重大環境汚染事故罪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水體·대기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전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有毒물질 혹은 기타 위험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치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공공재산의 중대한 손실 혹은 人命피해의 심각한 後果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3 種類의 환경오염범죄가 있다.

重大土地汚染事故罪는 토지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전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有毒물질 혹은 기타 위험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

- 16) 제66조 :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中國境외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버리거나 퇴적하거나 처치하거나 혹은 국무원 관련 主管部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한다 경우 세관에서 당해 고체폐기물의 返送을 命하고 동시에 인민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관의 감독을 도피하여 밀수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7) 重大環境汚染事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1987년 9월 10일, 국가환경보호국에서 발표한 「환경오염과 파괴사고의 보고에 대한 잠행방법(報告環境汚染與破壞事故潛行辦法)」에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환경오염사고에 해당한다. 직접경제손실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10만원 포함되지 않음); 사람에게 현저한 중독증상, 방사성상해 혹은 障礙後果가 우려되는 경우; 군중성적인 중독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사회안정이 영향을 받을 경우; 환경에 중대한 危害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포함된다.

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¹⁸⁾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에 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행위고, 重大水汚染事故罪는 「水汚染防治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水體에 임의로 오염물, 有毒物質을 배출하여 중대한 수질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행위고, 重大大氣汚染事故罪는 「大氣汚染防治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행위가 있는데 고체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두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重大環境汚染事故罪에 대한 量刑을 보면 「형법」 제338조에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단독적으로 벌금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後果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2) 進口境外固體廢物罪

「형법」 제339조는 고체폐기물수입에 관한 전문조항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에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버리거나 퇴적하거나 처리하였을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벌금형을 併科한다. 重大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後果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또 국무원 主管部門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原料로 사용하다가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을 처한다.

3) 밀수죄(走私罪)

그 외에 原料명의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固體폐기물, 液體폐기물과 氣體폐기물을 수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152조의 제2항은 “세관의 감독을 회피하여 국외의 고체폐기물, 액체폐기물과 기체폐기물을 국내로 운송하고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부과 혹은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18)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의 경우는 最高人民檢察院 1989년 11월 30일에 발표한 “立案標準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5만원 이상 경우에는 重大損失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단위에서 위 두 개 조항의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主管者와 기타 직접 責任人員에 대해서는 위의 두 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밀수죄로 처벌하고 있다.¹⁹⁾

3. 民事上 法律責任

固體廢物汚染環境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環境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문에서 조정[調解]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環境民事소송으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事後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는 것이 된다.

V. 고체폐기물오염환경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문제해결의 방법의 모색

1. 國家政策

중국정부는 1996년 3월 20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5’계획과 2010년 環境목표장요」를 공포하고 「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도 1996년 4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環境관리, 고체폐기물오염방지와 淨化, 관리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한다. 위 두 文件에 중국의 고체폐기물의 環境오염문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관철하겠다는 원칙과 資源·環境·人口의 3大問題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체폐기물의 環境오염을 최대한 控制하고 資源化로의 轉換에 노력²⁰⁾을 다 할 것이고, 고체폐기

19)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 (4),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통과.

20) 中國華南지구의 최대 쓰레기발전소인 深圳寶安垃圾焚燒發電廠(쓰레기소각발전소)이 2004년 2월 9일에 시공을 시작하였다. 工程은 연말에 완공하여 발전을 할 예정이다. 年發電量은 최대로 1.1억 度에 달하고 쓰레기의 日處理量은 1200톤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減量化, 無害化, 科學化로의

물의 越境이전을 堅決히 반대한다는 등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체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정부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중국의 전체적인 환경관리체계는 水, 氣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인 범위에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부서의 全力적인 配合도 받지 못하고 프로젝트도 적고 기초건설도 형성되지 못하였다. 비록 사람들이 쓰레기의 수집·청소·청결·운송 등에 대해 重視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日産日消(당일 產生한 쓰레기를 당일에 청소)을 하고 있지만 重視程度, 經費 등 원인으로 인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이미 건설한 처리시설의 無害化處理능력도 낮은 편에 속한다. 고체폐기물의 소각처리를 보더라도 전체 쓰레기處理중 소각이 1.68%를 차지하고, 땅에 묻는 것이 91.7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퇴적하여 비료로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중국정부는 2008년까지 4 : 3 : 3의 비례로 조정하려 계획하고 있다.²¹⁾ 지금으로서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방식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문제해결방법의 모색

고체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재활용률이 높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고체폐기물을 땅에 묻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런 방식의 피해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 비록 고체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해결하였으면 좋으려만 그에 따르는 비용과 기술문제로 조만간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에서도 國家環境保護‘十五計劃’에 固體廢物集中處理施設과 危險廢物集中處理施設을 건설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아래의 몇 가지 해결방법이 固體廢物처리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고 계획과 진행 중에 있다.

1) 固體廢物處理施設の 건설의 市場化

固體廢物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需要된다. 국가에서 공공이익과 관계된다는 이유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던 것을 이제는 시장경제의 原理에 따라 사회에 公開입찰하는 형식으로 社會資金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은 국내외의 회

새로운 출발이 아닐 수 없다. 深圳의 花園式 도시건설에 큰 의의가 있다. 『華南新聞』 2004.2.11 제3면.

21) 『中國環境報』 2003.6.13

사, 私營企業의 危險廢物處置시설에 투자하고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2003년 9월 1일에 가동한 天津市綜合性危險廢物處理處置中心이 중국과 프랑스의 合資企業으로 國家高科技產業示範項目의 하나에 속한다. 固體廢物處理의 시장원리에 따른 산업화의 길만이 해결의 방법이다.

2) 危險廢物집중처리시설의 적극 건설

2003년의 ‘사스’로 인해 중국 전역은 크게 곤욕을 치렀다. 그 중 돌출하게 나타난 문제가 바로 醫療廢物 등 危險廢物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제대로 된 醫療廢物처리시설이 없고 혹은 현존의 처리시설이 기술과 規模면에서 작아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등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원에서는 「全國危險廢物和醫療廢物處置施設建設計劃」을 비준하여 3년 내에 인민폐 150억 원을 투자해 危險廢物, 醫療廢物과 放射性廢物의 안전저장과 處置를 기본 해결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²²⁾ 危險廢物和醫療廢物處置施設建設의 기본 원칙을 보면 ① 集中處理와 합리적인 분포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성급 행정구역을 단위로 통일적으로 危險廢物集中處理施設을 건설하고 區를 둔 市級에 醫療廢物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고 “一省一庫”의 원칙에 따라 放射性廢物庫를 건설한다. ② 危險廢物과 醫療廢物處置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한다. 危險廢物集中處理施設을 건설할 경우 醫療廢物의 처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소각방식의 공예기술을 채용하는 醫療廢物處置시설의 경우 본 지방의 危險廢物의 소각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선진적이고 實用적인, 성숙된 기술을 채용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처치하여 2차 汚染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기능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危險廢物集中處理施設에 종합이용, 소각과 안전하게 묻을 수 있는 등 裝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독과 관리기능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측정, 정보, 기술개발, 감독관리 등 방면의 능력을 건설하여 危險廢物과 醫療廢物의 생성·수집·운송·저장·처리 등 각 단계에 대해 전과정에 걸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설비의 제조능력을 제고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외의 선진기술을 적극 참고하여 국내

22) 計劃을 보면 전국적으로 기능을 구비한 綜合性 危險廢物處置中心을 31개를 건설하고 危險廢物 처리능력이 282만 톤/년이 증가한다, 기업에서는 새로 건축 혹은 개조, 확대건축을 통해 350만 톤/년의 처리능력을 제고하여 당해년도의 危險廢物을 전부 처리하여 점차적으로 危險廢物을 저장하는 것을 소화한다. 醫療廢物集中處置시설은 300개를 건설하고 처리능력을 2080톤/日로 제고하여 현재와 금후의 處理需要를 만족할 수 있다. 새로 건축 혹은 개조, 확대건축을 통해 31개 省級 放射性廢物庫를 건설하여 창고를 새로이 15300 m²증가할 수 있다. 그 외에 31개 省級 危險廢物등기교환중심을 설립하고 전국적인 危險廢物교환 및 事故應急에 관련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國家環境保護總局網)

설비를 발전하고 설비의 國產化를 제고하여 국내설비의 제조기술수준을 높인다. ⑦ 試點을 통해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에 실행하기에는 조건이 미비한 상태이기에 우선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우선 실행한다.²³⁾

3. 危險廢物처리비용의 징수 강화²⁴⁾

현재의 危險廢物처리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조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危險廢物處置收費制度²⁵⁾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危險廢物처리방식을 개편하고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危險廢物處置運行機制를 建立하여 危險廢物처리능력의 부족으로 환경을 오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危險廢物處治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危險廢物처리비용은 이전의 徵收性質에서 經營性 비용의 性質로 변경하고 징수기준은 危險廢物處置 원가를 補償하고 合理的인 營利를 원칙으로 결정한다. 부동한 危險廢物에 대해 부동한 징수기준을 적용한다. 각 지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危險廢物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4. 固體廢物의 分離收去정책을 實施

固體廢物에 대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원천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일부 도시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마련하였지만 사람들의 환경보호의식이 낮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생활쓰레기의 원천에서의 분리배출과 쓰레기배출비용의 징수가 필요한 단계이다. 일부 도시의 주민들은 쓰레

23) 環保時空(<http://www.ep.net.cn>)

24) 2003년 11월 18일,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家環境保護總局, 衛生部, 財政部, 建設部가 연합으로 「關於實行危險廢物處置收費制度促進危險廢物處置產業化的通知」를 공포하였다.
(<http://sd-ep.cei.gov.cn>)

25) 「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法」 수정초안에 “오염자비용부담원칙을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위원회 立法調查研究組의 소개에 의하면 오염자가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환경보호의 하나의 관건적인 원칙으로 초안에 “국가는 고체폐기물처치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실행한다”는 내용을 증가한다고 하였다. 수정초안은 10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법원망(<http://www.chinacourt.org>, 2004.7.30)

기배출비용의 징수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비용수거와 관련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행하기 어렵다.

VI. 나가며

고체폐기물의 弊害가 점점 나타나고 있고 그 처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시설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체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점차적으로 소각과 재활용의 비중을 더욱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三化’원칙의 기초에서 더욱 과학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헌법에 법치국가를 建設하겠다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법치국의 건설과 더불어 公民들의 법의식의 제고는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일 것이다. 그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장소의 選定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청회의 소집 등이 그것이다. 즉 前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폐기물처리장소를 정하고 혹은 集體所有의 토지²⁶⁾를 徵用하여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실행하여 왔지만 이후에는 公民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 혹은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소의 선정이 그 만큼 어렵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에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농촌에 건설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상 도시와 인접한 郊外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의 주민, 교외의 주민, 농촌의 주민들의 환경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그 선정에 있어서 科學性和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법치행정과 공공이익의 측면, 그리고 중국의 토지제도를 고려하면 公民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집체소유토지에 대한 징용후의 농민들에 대한 배치문제를 법에 의한 행정으로 처리를 하면 정부는 쓰레기처리장소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6) 중국의 土地所有制에는 全民所有制와 集體所有制가 있고 私人所有制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의 土地에 속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접한 지역과 농촌의 토지는 集體所有의 토지에 속한다. 국가에서 集體所有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徵用 혹은 徵收(한국의 收容)의 절차를 통하여 集體所有의 토지를 국가소유의 토지로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하다.

國家環境保護總局的「2004年全國環境保護工作要點」을 보면 “...오염물배출을 控制하고 重點지역의 環境정화를 강화하고, 생태보호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核安全과 輻射[방사성]환경안전을 확보하고 環境에 대한 감독과 管理能力를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固體廢物汚染環境과 관련하여 “危險廢物과 醫療廢物처리시설의 建設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放射性廢庫[방사성폐기물처리창고]의 改造와 建設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배출비용의 징수와 사용의 관리를 강화하고 環境보호행정부문의 豫算을 강화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지금 環境문제에 대해 아주 중시를 하고 있고 環境정화사업에 대한 투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만큼 環境문제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人民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經濟效益과 더불어 環境效益, 社會效益의 이 세 가지 效益의 調和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 돋보인다.

주제어: 고체폐기물, 생활쓰레기, 공업폐기물, 위험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전.

【참 고 문 헌】

金瑞林主編, 「環境法學」, 북경대학출판사, 2002.

李國光主編, 「環境保護行政訴訟解析·判例·參考」, 中國民主法制출판사, 2000.

國家環境保護總局網站(<http://www.zhb.gov.cn>)

劉仁文, 「環境資源保護與環境資源犯罪」, 中信出版社, 2003.12

王燦發, 「環境法學教程」,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97.

韓德培主編, 「環境資源法論叢」, 법률출판사, 2001.

呂忠梅, 「環境法新視野」, 중국정법대학출판사, 2000.

【Abstract】

Act on the Control of Solid Wastes of China

Lu Qing-Xi · Cui Dong-Ri

This is a study on the Act on the Control of Solid Wastes of China. An outline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China is called as 'factory of the world' lately due to economy development which is caused by reform and opening policy, practical economy policy. In economy development process, China government is getting into trouble about the control of solid wastes. Developing Cities yield refuses of life, industrial wastes, dangerous wastes. Its disposal is connected directly with cities' surviva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have established 'Act on the Control of Solid Wastes' which is fundamental Act on solid wastes disposal in 1995, and 'Interim regulation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Control of Waste Import',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Medical Waste', 'Measures on the Control of City's Radiation', 'Act on the Control of Radiation Pollution', 'Measures on the Control of Medical Instrument and Waste' and so on.

These statutory laws adopted 'reclamation' as a main disposal means, but will adopt 'incineration' in future. And special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dangerous wastes and radiation wastes. Government will expand investment in this part. But most important policy is prior protection. We must make an effort to reduce a waste and recycle for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 : solid wastes, refuses of life, industrial wastes, dangerous wastes, radiation, moving of wastes.